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○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출신 임종국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준주거지역의 용적률 변경 및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
용도 비율 및 용적률 변경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
3년 추가 연장하고

「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 용적률 체계 개편에 따라
도시계획 조례 안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
체계를 도입하는 한편

정비구역 내 공공공지의 권한 위임사항 개정을 통해
결정 권한과 관리 주체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
400% 이하에서 500% 이하로 상향하고
서울도심 도심부 이외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을
위원회 심의를 거쳐 50% 이상에서 10%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
서울시는 지난 5년간 준주거지역에서 4,324호, 상업지역에서
12,371호 등 총 16,695호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.

본 개정안을 통해
2025년 3월 27일까지 한시로 적용되는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
2028년 3월 27일까지 3년 추가 연장함으로써
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